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07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64831 주민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피 고	1.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2.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4.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5.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변 론 종 결	2015. 9. 4.
판 결 선 고	2015. 9. 25.

주 문

1.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07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업무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각 지역에 본점, 지점, 여신관리센터, 업무지원센터 등의 사업장을 두고 있었는바, 아래 사업장들은 동일한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었다.

사업장	면세점 여부	폐업일	주소
명동본점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명동영업부	○		
명동스타PB센터	○		
명동법인영업부	○		
광화문기업금융점	○	2011. 1. 3.	서울 종로구 내수동 167
광화문본점			
서울콜센터			
광화문지점	○		
여의도본점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여의도영업부	○		
여의도법인영업부	○		
증권대행부			
서여의도본점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3
서여의도법인영업부	○		
서여의도영업부	○		
업무지원센터			서울 마포구 성암로 179
여신관리지원센터			
대출지원센터	○	2011. 4. 18.	
실행지원센터			
종암동지점	○		서울 성북구 종암로 44
신용여신관리센터			
담보여신관리센터			
기업여신관리센터	○	2010. 7. 16.	
경매소송관리센터	○	2010. 7. 16.	
업무지원센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07

대출실행센터			
동부 · 중부 · 서부여신관리센터			

원고는 위 사업장 중 종업원이 50명 이하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면세점으로 보아 종업원분 주민세[1]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서울특별시는 2014. 6. 5.부터 같은 달 12.까지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운영한 사업장 중 종업원이 50명 이하이고 동일한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이하 '이 사건 각 사업장'이라 한다)은 지방세법 상의 '사업소'로 볼 수 없고 원고가 면세점으로 본 사업장에 대하여는 종업원분 주민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지방세법에 따라 별지 부과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각 종업원분 주민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4. 10. 10. 조세심판원에 각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2009 ~ 2012년도분 종업원분 주민세 부과처분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2) 이 사건 각 사업장은 비록 동일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서로 독립성이

1) 구 지방세법상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지방세법의 개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으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로 변경되었고,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또한 지방세법의 개정(2014. 1. 1. 법률 12153호로 개정)으로 현재 그 명칭이 '종업원분 주민세'로 변경되었다. 이하 편의상 종업원분 주민세라고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07

인정되어 지방세법상 별도의 사업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는 2012. 6. 22.부터 같은 달 28.까지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 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 부과제척기간 범위 내)를 실시한 사실, 서울특별시는 2014. 6. 5.부터 같은 달 12.까지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 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 부과제척기간 범위 내)를 다시 실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2009 ~ 2012년도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미 세무조사를 마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중복하여 세무조사를 하고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4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서울특별시의 2014년도 세무조사는 원고의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취득세를 조사하기 위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자료를 발견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2009 ~ 2012년도분 종업원분 주민세 부과처분을 한 것인바, 이는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복조사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서울특별시가 조세탈루의 혐의를 포착한 것은 원고의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취득세에 관한 것이고, 종업원분 주민세에 관하여는 세무조사를 통하여 비로소 탈루를 확인하게 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를 두고 조세탈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07

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2009 ~ 2012년도분 종업원분 주민세 부과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2)]

가)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각 사업장의 인적·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문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해 가려져야 하고, 이는 건물의 간판이나 사무소의 표지 등과 같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장의 외관보다는 장소적 인접성과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 상호간의 관련성과 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 횡적·종적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감독 구조 등 실질 내용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10188 판결 참조).

나) 갑 제10 내지 13,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사업장 중 영업부(영업점)은 대(對)고객업무 및 그 부대업무를, 법인영업부(기업금융)는 법인(기업)고객에 대한 상품판매, 신용평가 및 교차판매업무를, PB센터는 Private Banking 고객 대상 종합자산관리 및 컨설팅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각 수행하고 있고, 별개의 업무그룹에 속해 있는 사실, 이 사건 각 사업장은 사업장별로 지점 등기, 지배인 등기를 경료하고, 사업자등록 역시 별도로 하고 있는 사실, 원고 산하 업무그룹은 별도로 예산을 배정받아 사용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각 사업장은 동일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층별로

2)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이 이유 있음에 따라 두 번째 주장에서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2013년도, 2014년도분 종업원분 주민세만을 다룬다. 한편,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2013년도, 2014년도분 종업원분 주민세는 위 표에서 살핀 면세점 중 영업부, PB센터, 법인영업부, 지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부과된 것이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07

나뉘어 있는 등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사업장은 고객층이 서로 겹치지 않고 업무의 내용이 서로 달라 별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각 사업장은 사업장 별로 지점 등기를 하였는바 법률적으로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각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별개로 하여 각각 별개의 과세 주체로 인식되는 점, ④ 이 사건 각 사업장은 예산이 독립적으로 나뉘어 있는 점, ⑤ 이 사건 각 사업장은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외부에서 쉽게 별개의 사업장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점, ⑥ 이 사건 각 사업장이 별개의 건물에 위치하였다면 독립된 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동일한 건물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독립된 사업장으로서의 성격이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사업장이 동일한 건물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별개의 사업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2013, 2014년도분 종업원분 주민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숙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07

판사 남성우

판사 김재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07

부과처분 내역

물건지	피고	귀속연월	세목	본세	가산세	합계	부과처분일	비고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9-1	1.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200907	종업원할 사업소세	1,256,330	927,790	2,184,120	2014.07.20	갑 제1호증의1
		200908		2,877,650	2,098,380	4,976,030	2014.07.20	갑 제1호증의2
		200909		1,865,850	1,342,660	3,208,510	2014.07.20	갑 제1호증의3
		200910		1,144,250	820,990	1,965,240	2014.08.11	갑 제1호증의4
		200911		3,114,490	2,206,600	5,321,090	2014.08.11	갑 제1호증의5
		200912		3,552,750	2,483,010	6,035,760	2014.08.11	갑 제1호증의6
		201001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1,074,330	741,170	1,815,500	2014.08.11	갑 제1호증의7
		201002		3,077,940	2,097,600	5,175,540	2014.08.11	갑 제1호증의8
		201003		1,381,180	927,590	2,308,770	2014.08.11	갑 제1호증의9
		201004		1,323,230	877,560	2,200,790	2014.08.11	갑 제1호증의10
		201005		2,894,950	1,893,000	4,787,950	2014.08.11	갑 제1호증의11
		201006		2,373,960	1,529,540	3,903,500	2014.08.11	갑 제1호증의12
		201007		1,215,840	772,770	1,988,610	2014.08.11	갑 제1호증의13
		201008		2,925,060	1,831,960	4,757,020	2014.08.11	갑 제1호증의14
		201009		1,684,960	1,039,610	2,724,570	2014.08.11	갑 제1호증의15
		201010		1,213,220	737,630	1,950,850	2014.08.11	갑 제1호증의16
		201011		3,201,360	1,917,610	5,118,970	2014.08.11	갑 제1호증의17
		201012		3,230,100	1,904,780	5,134,880	2014.08.11	갑 제1호증의18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07

		201101	1,497,420	869,090	2,366,510	2014.08.11	갑 제1호증의19
		201102	3,122,120	1,785,840	4,907,960	2014.08.11	갑 제1호증의20
		201103	1,316,630	740,460	2,057,090	2014.08.11	갑 제1호증의21
		201104	1,309,280	724,540	2,033,820	2014.08.11	갑 제1호증의22
		201105	2,956,070	1,609,280	4,565,350	2014.08.11	갑 제1호증의23
		201106	2,546,150	1,362,440	3,908,590	2014.08.11	갑 제1호증의24
		201107	1,234,690	649,560	1,884,250	2014.08.11	갑 제1호증의25
		201108	2,534,950	1,307,020	3,841,970	2014.08.11	갑 제1호증의26
		201109	1,759,460	893,450	2,652,910	2014.08.11	갑 제1호증의27
		201110	1,195,010	595,710	1,790,720	2014.08.11	갑 제1호증의28
		201111	2,619,730	1,280,770	3,900,500	2014.08.11	갑 제1호증의29
		201112	5,590,940	2,684,760	8,275,700	2014.08.11	갑 제1호증의30
		201201	1,292,180	608,480	1,900,660	2014.08.11	갑 제1호증의31
		201202	2,553,360	1,178,620	3,731,980	2014.08.11	갑 제1호증의32
		201203	1,110,090	502,750	1,612,840	2014.08.11	갑 제1호증의33
		201204	1,049,260	465,760	1,515,020	2014.08.11	갑 제1호증의34
		201205	2,786,030	1,209,960	3,995,990	2014.08.11	갑 제1호증의35
		201206	1,349,680	574,410	1,924,090	2014.08.11	갑 제1호증의36
		201207	1,389,700	578,530	1,968,230	2014.08.11	갑 제1호증의37
		201208	2,297,280	934,980	3,232,260	2014.08.11	갑 제1호증의38
		201209	1,417,880	564,310	1,982,190	2014.08.11	갑 제1호증의39
		201210	966,770	375,190	1,341,960	2014.08.11	갑 제1호증의40
		201211	2,286,060	868,010	3,154,070	2014.08.11	갑 제1호증의41
		201212	3,419,210	1,266,470	4,685,680	2014.08.11	갑 제1호증의42
		201301	865,400	225,430	1,090,830	2014.08.11	갑 제1호증의43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07

		201302		2,635,080	665,080	3,300,160	2014.08.11	갑 제1호증의44
		201303		1,129,590	274,930	1,404,520	2014.08.11	갑 제1호증의45
		201304		1,407,530	329,920	1,737,450	2014.08.11	갑 제1호증의46
		201305		2,608,580	587,180	3,195,760	2014.08.11	갑 제1호증의47
		201306		1,358,630	293,590	1,652,220	2014.08.11	갑 제1호증의48
		201307		1,017,640	209,830	1,227,470	2014.08.11	갑 제1호증의49
		201308		2,356,100	465,320	2,821,420	2014.08.11	갑 제1호증의50
		201309		1,855,700	349,790	2,205,490	2014.08.11	갑 제1호증의51
		201310		1,053,960	188,540	1,242,500	2014.08.11	갑 제1호증의52
		201311		2,329,560	396,480	2,726,040	2014.08.11	갑 제1호증의53
		201312		3,288,020	529,040	3,817,060	2014.08.11	갑 제1호증의54
		201401	종업원분 주민세	1,356,430	205,630	1,562,060	2014.08.11	갑 제1호증의55
		201402		2,746,880	393,340	3,140,220	2014.08.11	갑 제1호증의56
		201403		1,389,050	185,980	1,575,030	2014.08.11	갑 제1호증의57
		201404		1,290,320	160,380	1,450,700	2014.08.11	갑 제1호증의58
		201405		2,972,520	343,620	3,316,140	2014.08.11	갑 제1호증의59
합 계				120,668,390	55,584,720	176,253,11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07

물건지	피고	귀속연월	세목	본세	가산세	합계	부과 처분일	비고
서울 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167	2. 서울특 별시 종로 구청장	200907	종업원할 사업소세	611,850	451,850	1,063,700	2014.07.21	갑 제2호증의1
		200908		1,416,420	1,032,840	2,449,260	2014.07.21	갑 제2호증의2
		200909		989,410	711,970	1,701,380	2014.07.21	갑 제2호증의3
		200910		601,670	433,300	1,034,970	2014.08.12	갑 제2호증의4
		200911		1,564,420	1,112,590	2,677,010	2014.08.12	갑 제2호증의5
		200912		1,824,630	1,280,130	3,104,760	2014.08.12	갑 제2호증의6
		201001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546,000	378,130	924,130	2014.08.12	갑 제2호증의7
		201002		1,595,490	1,091,620	2,687,110	2014.08.12	갑 제2호증의8
		201003		716,190	482,900	1,199,090	2014.08.12	갑 제2호증의9
		201004		620,020	412,830	1,032,850	2014.08.12	갑 제2호증의10
		201005		1,532,000	1,005,880	2,537,880	2014.08.12	갑 제2호증의11
		201006		1,248,840	807,970	2,056,810	2014.08.12	갑 제2호증의12
		201007		627,890	400,750	1,028,640	2014.08.12	갑 제2호증의13
		201008		1,482,040	932,190	2,414,230	2014.08.12	갑 제2호증의14
		201009		858,670	532,090	1,390,760	2014.08.12	갑 제2호증의15
		201010		628,730	383,940	1,012,670	2014.08.12	갑 제2호증의16
		201011		1,639,710	986,590	2,626,300	2014.08.12	갑 제2호증의17
		201012		1,525,260	903,540	2,428,800	2014.08.12	갑 제2호증의18
		201101		578,780	337,460	916,240	2014.08.12	갑 제2호증의19
		201102		1,217,680	699,780	1,917,460	2014.08.12	갑 제2호증의20
		201103		451,420	255,070	706,490	2014.08.12	갑 제2호증의21
합 계				22,277,120	14,633,420	36,910,54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07

물건지	피고	귀속연월	세목	본세	가산세	합계	부과 처분일	비고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2, 36-3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200907	종업원할 사업소세	1,071,650	791,410	1,863,060	2007.07.21.	갑 제3호증의1
		200907		970,720	716,870	1,687,590	2007.07.21.	갑 제3호증의2
		200908		2,430,570	1,772,360	4,202,930	2007.07.21.	갑 제3호증의3
		200908		2,295,560	1,673,920	3,969,480	2007.07.21.	갑 제3호증의4
		200909		1,508,720	1,085,670	2,594,390	2007.07.21.	갑 제3호증의5
		200909		1,453,780	1,046,130	2,499,910	2007.07.21.	갑 제3호증의6
		200910~200912		11,203,950 (가산세 포함)[1]			2007.08.13.	갑 제3호증의7
		200910~200912		10,502,810 (가산세 포함)			2007.08.13.	갑 제3호증의8
		201001~201012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35,269,220 (가산세 포함)			2007.08.13.	갑 제3호증의9
		201001~201012		33,230,740 (가산세 포함)			2007.08.13.	갑 제3호증의10
		201101~201112		35,035,620 (가산세 포함)			2007.08.13.	갑 제3호증의11
		201101~201112		34,284,470 (가산세 포함)			2007.08.13.	갑 제3호증의12
		201201~201212		30,905,250 (가산세 포함)			2007.08.13.	갑 제3호증의13
		201201~201212		30,470,750 (가산세 포함)			2007.08.13.	갑 제3호증의14
		201301~201312		27,399,950 (가산세 포함)			2007.08.13.	갑 제3호증의15
		201301~201312		27,177,600 (가산세 포함)			2007.08.13.	갑 제3호증의16
		201401~201404	종업원분 주민세	10,689,260 (가산세 포함)			2007.08.13.	갑 제3호증의17
		201401~201404		10,053,710 (가산세 포함)			2007.08.13.	갑 제3호증의18
합 계				313,040,69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07

물건지	비고	귀속연월	세목	본세	가산세	합계	부과처분일	비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DMC	4.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200911	종업원할 사업소세	2,180,020	1,550,420	3,730,440	2014.08.14	갑 제4호증의1
		200912		2,627,880	1,843,710	4,471,590	2014.08.14	갑 제4호증의2
		201008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2,020,890	1,271,130	3,292,020	2014.08.14	갑 제4호증의3
		201009		1,407,190	872,020	2,279,210	2014.08.14	갑 제4호증의4
		201010		905,480	552,970	1,458,450	2014.08.14	갑 제4호증의5
		201011		3,015,420	1,814,370	4,829,790	2014.08.14	갑 제4호증의6
합 계				12,156,880	7,904,620	20,061,50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07

물건지	피고	귀속연월	세목	본세	가산세	합계	부과처분일	비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8-2	5.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200907	종업원할 사업소세	2,260,700	1,690,550	3,951,250	2014.08.11	갑 제5호증의1
		200908		4,675,420	3,452,790	8,128,210	2014.08.11	갑 제5호증의2
		200909		3,324,360	2,423,120	5,747,480	2014.08.11	갑 제5호증의3
		200910		1,961,130	1,412,390	3,373,520	2014.08.11	갑 제5호증의4
		200911		5,117,400	3,639,490	8,756,890	2014.08.11	갑 제5호증의5
		200912		6,390,560	4,441,510	10,772,070	2014.08.11	갑 제5호증의6
		201001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990,580	686,060	1,676,640	2014.08.11	갑 제5호증의7
		201002		891,670	610,070	1,501,740	2014.08.11	갑 제5호증의8
		201003		2,593,900	1,749,060	4,342,960	2014.08.11	갑 제5호증의9
		201004		2,376,550	1,582,540	3,959,090	2014.08.11	갑 제5호증의10
		201005		5,619,840	3,689,970	9,309,810	2014.08.11	갑 제5호증의11
		201006		4,778,230	3,091,500	7,869,730	2014.08.11	갑 제5호증의12
		201007		367,780	234,740	602,520	2014.08.11	갑 제5호증의13
		201008		859,810	540,810	1,400,620	2014.08.11	갑 제5호증의14
		201009		564,060	349,540	913,600	2014.08.11	갑 제5호증의15
		201010		360,180	219,950	580,130	2014.08.11	갑 제5호증의16
		201011		1,130,580	680,260	1,810,840	2014.08.11	갑 제5호증의17
		201012		905,250	536,270	1,441,520	2014.08.11	갑 제5호증의18
		201101		433,490	252,760	686,250	2014.08.11	갑 제5호증의19
		201102		896,080	514,970	1,411,050	2014.08.11	갑 제5호증의20
		201103		379,300	214,340	593,640	2014.08.11	갑 제5호증의21
		201104		401,430	223,220	624,650	2014.08.11	갑 제5호증의22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07

		201105	930,650	509,150	1,439,800	2014.08.11	갑 제5호증의23
		201106	726,530	390,720	1,117,250	2014.08.11	갑 제5호증의24
		201107	397,800	210,350	608,150	2014.08.11	갑 제5호증의25
		201108	775,250	401,810	1,177,060	2014.08.11	갑 제5호증의26
		201109	565,880	288,870	854,750	2014.08.11	갑 제5호증의27
		201110	364,670	182,760	547,430	2014.08.11	갑 제5호증의28
		201111	816,890	401,570	1,218,460	2014.08.11	갑 제5호증의29
		201112	2,011,820	971,500	2,983,320	2014.08.11	갑 제5호증의30
		201201	483,330	228,890	712,220	2014.08.11	갑 제5호증의31
		201202	872,350	405,030	1,277,380	2014.08.11	갑 제5호증의32
		201203	495,260	225,630	720,890	2014.08.11	갑 제5호증의33
		201204	405,920	181,270	587,190	2014.08.11	갑 제5호증의34
		201205	997,330	435,820	1,433,150	2014.08.11	갑 제5호증의35
		201206	506,530	216,940	723,470	2014.08.11	갑 제5호증의36
		201207	538,010	225,420	763,430	2014.08.11	갑 제5호증의37
		201208	938,410	384,460	1,322,870	2014.08.11	갑 제5호증의38
		201209	627,100	251,270	878,370	2014.08.11	갑 제5호증의39
		201210	414,580	162,010	576,590	2014.08.11	갑 제5호증의40
		201211	1,040,630	397,930	1,438,560	2014.08.11	갑 제5호증의41
		201212	1,603,650	598,320	2,201,970	2014.08.11	갑 제5호증의42
		201301	352,380	92,740	445,120	2014.08.11	갑 제5호증의43
		201302	1,021,470	260,570	1,282,040	2014.08.11	갑 제5호증의44
		201303	449,970	110,740	560,710	2014.08.11	갑 제5호증의45
		201304	603,260	143,030	746,290	2014.08.11	갑 제5호증의46
		201305	1,000,840	227,980	1,228,820	2014.08.11	갑 제5호증의47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07

		201306		535,380	117,130	652,510	2014.08.11	갑 제5호증의48
		201307		410,380	85,720	496,100	2014.08.11	갑 제5호증의49
		201308		935,310	187,240	1,122,550	2014.08.11	갑 제5호증의50
		201309		796,910	152,360	949,270	2014.08.11	갑 제5호증의51
		201310		446,660	81,100	527,760	2014.08.11	갑 제5호증의52
		201311		958,090	165,650	1,123,740	2014.08.11	갑 제5호증의53
		201312		1,441,280	235,790	1,677,070	2014.08.11	갑 제5호증의54
		201401	종업원분 주민세	552,380	85,230	637,610	2014.08.11	갑 제5호증의55
		201402		940,150	137,160	1,077,310	2014.08.11	갑 제5호증의56
		201403		460,440	62,890	523,330	2014.08.11	갑 제5호증의57
		201404		489,220	62,120	551,340	2014.08.11	갑 제5호증의58
		201405		1,002,130	118,540	1,120,670	2014.08.11	갑 제5호증의59
합 계				75,127,140	41,631,620	116,758,760		
이 사건 각 부과처분 합계				446,651,080	216,373,520	663,024,60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07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제1항제3호(제66조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장 목적세

제3절 사업소세

제243조 (정의)

사업소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3. "종업원할"이라 함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
5.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라 함은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 임금 ·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 · 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244조 (납세의무자)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 · 군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주"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제247조 (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

제248조 (세율)

① 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을 초과할 수 없다.

2. 종업원할 :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0.5

제249조 (면세점)

①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을, 당해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07

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재산할을 각각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점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0조 (징수방법과 납기)

① 사업소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47조 및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장 지방소득세

제1절 통칙

제85조(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5.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6.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7.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8.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②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한다.

제3절 종업원분

제99조(과세표준)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

제100조(세율)

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분의 세율을 제1항의 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제101조(면세점)

①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07

② 제1항에 따른 면세점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2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종업원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 지방세법(2014. 1. 1. 법률 12153호로 개정된 것)

제7장 주민세

제1절 통칙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제4절 종업원분

제84조의2(과세표준)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

제84조의3(세율)

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분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84조의4(면세점)

①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세점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의6(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종업원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4조의2 및 제84조의3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끝.